제 호		
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		
1. 설 립 자 성 명: 주 소:	(생년월일:	)
2. 운 영 자 성 명: 주 소:	(생년월일:	)
3. 학원의 명칭:		
4. 학원 소재지:		
「도로교통법」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합니다.		
	년 월	잉
시・도경찰청장 직인		

(주) 테두리는 이중테두리선으로 하되, 각각 3㎜의 금색으로 한다.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120g/m²]